

임금체불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범법행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경제적 제재 강화 등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1. 주요 기사 내용

- 2.11.(일) 뉴스1, “ ‘역대 최대’ 임금체불에 정부 칼 댔지만...근절대책 실효성은 ‘미흡’ ” 기사 관련

2. 설명 내용

- ‘23년 임금체불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는 경기 등 요인과 함께 체불사업주의 범법행위 인식 결여, 사회적 관대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
 - 그간 고용노동부는 고의·상습체불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한 법집행과 강제수사·근로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고, 국토부·법무부 등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업해왔으며,
 - 앞으로도 고액·다수 체불사업장은 특별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

1) 기사 중,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내놓았으나 역대 최대 임금체불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,

-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불사업주의 체감비용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「상습체불 근절대책」을 발표하고(’23.5월) 그 내용이 반영된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바, 조속히 논의·통과될 필요가 있음
- 또한, 그간 지적되어온 체불범죄의 낮은 형량·벌금형 등에 대한 보완은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정식 재판 청구 등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필요한 만큼,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

2) 기사 중,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빨리 받기 위해 감액된 금액으로 사업주와 합의하는 문제가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관련하여,

- 반의사불벌죄는 체불임금의 빠른 청산을 위해 근로자에게 사업주 처벌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전액변제가 안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선택에 따른 합의를 반의사불벌죄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며, 반의사불벌죄 시행('05.7월)이후 체불청산이 2배이상 증가한 것도 감안할 필요

* 체불금액 지도해결 비율(%): ('04) 28.5 → ('05 도입) → ('08) 54.1 → ('22) 59.8

- 대부분 소액벌금형에 그치는 임금체불에 대해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행할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도 고려

3) 기사 중,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벌이 대부분 벌금형이고 벌금도 많지 않으므로,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체불액의 2~3배에 해당하는 부가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관련하여,

- 부가금(이른바, 징벌적 손해배상) 제도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,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외 손해배상까지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 제도 실효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

□ 임금체불은 원인도 복합적이고 근로자의 생계와 공동체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, 사회 전체적으로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

- 우선 사법당국의 엄정한 판단과 형사처벌의 확행을 통해 “임금체불=중대한 범죄행위”라는 사업주 및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며,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
- 아울러, 국회계류 중인 상습체불 근절법안(근로기준법 개정안)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종환 (044-202-7526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홍 (044-202-7529)